

2024. 6. 28.(금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6월 27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

자원순환과장	정미선	02-2133-3670
생활폐기물감량팀장	장지훈	02-2133-3695
관련 누리집 (메뉴)		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3쪽

서울시, 1~4일 1회용품 사용실태 시·구 합동점검 실시

- 서울시 내 주요 업무지구에 소재한 식품접객업 사업장 대상 시·구 합동점검
-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 여부 등 주기적인 실태점검 실시 계획
- 대체 빨대, 다회용 컵 이용 등 1회용품 감축을 위한 홍보활동 병행

- 서울시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1회용품의 사용억제 대상 업종 중 비중이 가장 큰 식품접객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·무상제공금지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선다.
- '23년 말 기준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 280,212개소 중 집단급식소·식품접객업은 173,882개소로 62%를 차지한다.
- 시는 제도 정착을 위해 2022년 39,946건, 2023년 76,721건의 1회용품 사용규제 준수 여부 점검 및 제도·홍보를 진행하였다.

- 이번 시·구 합동점검은 7월 1일(월)부터 7월 4일(목)까지 서울시 내 주요 업무지구가 속해 유동인구가 많은 3개 자치구(중구, 영등포구, 강남구)를 대상으로 시행한다. 특히, 매장 내 1회용 컵(플라스틱컵 및 금속박컵 등) 및 1회용 용기 사용 여부와 함께 무인정보단말기(키오스크)의 경우 1회용품 사용 선택 설정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.
- '23.11.7. 환경부에서 발표한 '일회용품 관리 개선방안'에 따라 매장 내 1회용 종이컵 사용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매장 내 1회용 합성수지 컵 사용은 금지되어 있다.
- 자원재활용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'24.3월 매장 내 무인정보단말기(키오스크 등)를 통해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.
- 한편,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체류시간이 적은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. 또한, 규제에서 제외된 '매장 내 1회용 종이컵 사용' 및 계도기간이 연장된 플라스틱 빨대에 대해서도 다회용 컵 사용, 대체빨대 전환 등 자발적 감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.
-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“편리함 때문에 익숙하게 사용해 오던 1회용품 소비를 줄이는 문화가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”며 “텀블러와 다회용컵 사용을 생활화하고 장바구니 사용을 실천하는 등 일상생활 속 작은 노력을 기울여달라”고 당부했다.

업종	준수 사항	적용대상 1회용품
1. 집단급식소, 식품접객업 ※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	사용억제(금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회용 컵(합성수지·금속박 등) • 1회용 접시·용기(종이, 합성수지·금속박 등) • 1회용 나무젓가락, 이쑤시개 • 1회용 수저·포크·ナイ프 • 1회용 비닐식탁보 • 1회용 플라스틱 빨대·젓는 막대
	제작·배포억제 등 사용억제(금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회용 광고선전물
	무상제공금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(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, 제과점업은 사용 금지)
2.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·가공업,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	사용억제(금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회용 합성수지용기 (밀봉포장용기,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)
3. 목욕장업, 50인실이상 숙박업	무상제공금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회용 면도기·칫솔·치약·샴푸·린스
4. 대규모점포	사용억제(금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회용 봉투 및 쇼핑백(종이재질은 제외) • 1회용 우산 비닐
	제작·배포억제 등 사용억제(금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회용 광고선전물
5. 체육시설(운동장, 체육관, 종합체육시설 등)	무상제공금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회용 응원용품 (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금지)
6. 도·소매업 (매장면적 33㎡ 초과 업소)	무상제공금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회용 봉투·쇼핑백 (종합소매업은 사용금지)
	제작·배포억제 등 사용억제(금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회용 광고선전물
7. 금융업, 보험 및 연금업, 증권 및 선물 중개업,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, 광고 대행업,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, 영화관 운영업, 공연시설 운영업	제작·배포억제 등 사용억제(금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회용 광고선전물